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8호

「비료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농촌진흥청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안)

제6조제2항 중 “그린퇴비”를 “가축분퇴비”로 한다.

별표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린(1급)퇴비”를 “가축분퇴비”로 한다.

별표2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석회질비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01. 소석회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2. 석회석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3. 석회고토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에 “2. 입상의 경우 알칼리분 : 51, 가용성고토 : 14”을 신설하고,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4. 부산소석회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5. 부산석회의 “그 밖의 규격”에 “4. 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

여야함”을 신설한다

06. 패화석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7. 생석회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규산질비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01. 규산질의 “그 밖의 규격”에 “4. 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5. 사상으로 제조한 입상제품 붕괴도 : 2.0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3. 규회석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4. 광재규산질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6. 규인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7. 규인칼륨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별표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01. 그린(1급)퇴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린(1급)퇴비”를 “가축분퇴비”로 하고, 규격의 함량(%)에 “유기물 40”을 “유기물 30”으로 하고,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에 “비소 46, 카드뮴 5, 수은 2, 납 136, 크롬 272, 구리 364, 니켈 46, 아연 909”을 “비소 45, 카드뮴 5, 수은 2, 납 130, 크롬 200, 구리 360, 니켈 45, 아연 900”으로 하고, 그 밖의 규격에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 2.0%이

하”를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 1.8%이하”로, “3.수분(H₂O) : 45% 이하”를 “3.수분(H₂O) : 55%이하”로 하며, “4.부속도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속도 측정기준(솔비타 4이상 혹은 콤팩 부속완료)에 적합하거나 종자발아법의 경우 무 발아지수 70이상”을 신설한다. 비교의 “1. 제조시 별표 5의 1. 사용가능한 원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1.별표 5의 1.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가축분뇨를 50% 이상 사용, 2.가축분뇨 외의 원료는 별표 5의 1.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제1호 농림 부산물류, 광물질,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함”으로 하고, “2.부속도 측정을 위하여 자가발열온도측정법 또는 유식물검정법을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02. 퇴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에 “비소 111, 카드뮴 11, 수은 4, 납 333, 크롬 667, 구리 667, 니켈 111, 아연 2000”을 “비소 45, 카드뮴 5, 수은 2, 납 130, 크롬 250, 구리 400, 니켈 45, 아연 1000”으로 하고, 그 밖의 규격에 “4.부속도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속도 측정기준(솔비타 4이상 혹은 콤팩 부속완료)에 적합하거나 종자발아법의 경우 무 발아지수 70이상”을 신설하며, 비교의 “2.가축분이 50% 이상 포함된 비료에 한하여 축종별로 『가축분퇴비(우분, 돈분, 계분 등)』 표기 가능 (‘07.4.20)” 및 “3.부속도측정을 위하여 기계적인 측정법을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다.(‘07.4.20)”는 삭제한다.

11. 가축분뇨발효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격의 함량(%)에 “질소전량 0.3”을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으로 하고, 비교의 “1.저장기간 및 시설 : 충분한 발효시 까지 저장, 호기성 발효의 경우 폭기·교반장치 및 저장시설 200M/T이상 설치”를 “1.충분한 발효시 까지

저장”으로 하며, “3.살포지 : 민가에서 200m 이상 격리지역”은 “3.주거지에서 200m이상 격리 지역, 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거리내에서 근접살포 허용”으로 하고, “6.혐기성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 가축분뇨 이외의 농림부산물류 또는 음식물폐기물 30% 이내 사용 할 수 있음”을 신설한다.

별표5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린(1급)퇴비”을 “가축분퇴비”로 하고, 원료의 종류에 “농림부산물류(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이탄, 토탄, 갈탄 및 기타 유사물질 포함)”을 “농림부산물류(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기타 유사물질 포함 및 상기의 물질을 이용한 버섯 폐배지), 이탄, 토탄, 갈탄”으로 하고, “토양미생물제제”를 추가하며, 비고에 “제오라이트”를 “기타비료의 제오라이트”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업자(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5. 석회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소석회	알카리분 : 60		1.분상(粉狀) : 분말도는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09.10.1) 2.입상(粒狀) :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 ('02.1.31, '09.10.1) 3.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02. 석회석	1.알카리분 : 45		1.분상(粉狀) : 분말도는 1.70mm체에 98%이상 600 μ m체에 60%이상 통과하여야함('09.10.1) 2.입상(粒狀) :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02.1.31) 3.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석회석 원석 또는 분쇄품에 한함.
03. 석회고토	1.알카리분 : 53 가용성고토 : 15 2.입상의 경우 알칼리분 : 51 가용성고토: 14		1.분상(粉狀) : 분말도는 1.70mm체에 98% 이상 600 μ m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함('09.10.1) 2.입상(粒狀) :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 ('02.1.31, '09.10.1) 3.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석회석(백운석) 원석 또는 분쇄품에 한함.
04. 부산소석회	알카리분 : 60	1.알카리분 함유율 1%에 대하여 니켈 : 0.01 크롬 : 0.1 티탄 : 0.04 2.최대한도량 니켈 : 0.4 크롬 : 4.0 티탄 : 1.5	1.분상(粉狀) : 분말도는 1.70mm체에 98%이상 600 μ m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09.10.1) 2.입상(粒狀) :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 ('02.1.31, '09.10.1) 3.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석회석 원석 또는 분쇄품 이외에 타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된것으로서 (생석회 또는 부생(副生)분말생석회를 혼합하는 것 포함) 산화석회분 및 산화고토분을 함유하는 것에 한함.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5. 부산석회	알카리분 : 45	1.알카리분 함유율 1%에 대하여 니켈 : 0.01 크롬 : 0.1 티탄 : 0.04 2.최대한도량 니켈 : 0.4 크롬 : 4.0 티탄 : 1.5	1.분상(粉狀) : 분말도는 1.70mm체에 98% 이상 600µm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09.10.1) 2.입상(粒狀) :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 ('02.1.31, '09.10.1) 3.산물은 수분 최대함유량 20%이하 4.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석회석 원석 또는 분쇄품 이외에 타 화학제품 생산시에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산화석회 분 및 산화고토분을 함유하는 것에 한함.
06. 패화석	알카리분 : 40		1.분상(粉狀) : 분말도는 1.70mm체에 98%이상 600µm체에 60%이상 통과하여야 함 ('09.10.1) 2.입상(粒狀) :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 ('02.1.31, '09.10.1) 3.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패화석 분말에 한함 (패각포함)
07. 생석회 (신살'96.1.10)	알카리분 : 80		1.분상(粉狀) : 분말도는 1.70mm체에 98%이상 600µm체에 60%이상 통과하여야 함 ('09.10.1) 2.입상(粒狀) :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 ('02.1.31, '09.10.1) 3.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6. 규산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규산질 (‘09.10.1)	1.가용성규산 : 25 알카리분 : 40 구용성 고토 : 2 2.미량요소를 보증할 경우 다음 성분별 함량중 2종 이상을 구용성으로 보증 철 : 0.30 아연 : 0.05 붕소 : 0.05 망간 : 0.30 구리 : 0.05 (‘02.1.31)	가용성규산 함유율 1%에 대하여 니켈 : 0.012 크롬 : 0.12 티탄 : 0.06 (‘09.10.1)	1.분상(粉狀) : 분말도 1.70mm체에 98%이상, 600 μ m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09.10.1) 2.사상(沙狀) : 2.00mm체에 98%이상 통과하여야 함 (‘09.10.1) 3.입상(粒狀) : 1, 2 분말을 조립 제조한 것. (‘02.1.31) 4.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5.사상으로 제조한 입상제품 붕괴도 : 2.0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분상 및 사상 제품의 경우 살포시 가려움 예방에 관한 주의 사항 기재 (‘09.10.1)
03. 규회석 (‘09.10.1)	가용성규산 : 8 알카리분 : 35		1.분상(粉狀) : 분말도는 1.70mm체에 98%이상 600 μ m체에 60%이상 통과하여야 함 (‘09.10.1) 2.입상(粒狀) : 1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 (‘02.1.31, ‘09.10.1) 3.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단, 규회석(천연산) 이외의 이물질은 혼합할 수 없음
04. 광제(鑛滓) 규산질 (신설’96.1.10) (‘09.10.1)	가용성규산 : 15 알카리분 : 55 구용성고토 : 2	가용성규산 함유율 1%에 대하여 니켈 : 0.012 크롬 : 0.12 티탄 : 0.06 (‘09.10.1)	1.분상(粉狀) : 분말도는 1.70mm체에 98%이상 600 μ m체에 60%이상 통과하여야 함 (‘09.10.1) 2.입상(粒狀) :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 (‘02.1.31, ‘09.10.1) 3.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분상 및 사상 제품의 경우 살포시 가려움예방에 관한 주의 사항 기재 (‘09.10.1)
06. 규인 (‘09.10.1)	구용성인산 : 18 가용성규산 : 15 구용성고토 : 3	1.가용성규산 함유율 1%에 대하여 니켈 : 0.012 크롬 : 0.12 티탄 : 0.06 (‘09.10.1) 2.구용성인산 함유율 1%에 대하여 카드뮴 : 0.00018	1.분상(粉狀) : 분말도는 1.70mm체에 98%이상 600 μ m체에 60%이상 통과하여야 함 (‘09.10.1) 2.입상(粒狀) :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 (‘02.1.31, ‘09.10.1) 3.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07. 규인칼륨 (‘09.10.1)	가용성규산 : 15 구용성인산 : 10 구용성칼리 : 10 (‘09.10.1)	1.가용성규산 함유율 1%에 대하여 니켈 : 0.012 크롬 : 0.12 티탄 : 0.06 (‘09.10.1) 2.구용성인산 함유율 1%에 대하여 카드뮴 : 0.00018	1.분상(粉狀) : 분말도는 1.70mm체에 98%이상 600 μ m체에 60%이상 통과하여야 함 (‘09.10.1) 2.입상(粒狀) :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 (‘02.1.31, ‘09.10.1) 3.붕괴도 :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